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97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남근 · 권향엽 · 김문수
김 윤 · 김현정 · 박용갑
박해철 · 복기왕 · 양부남
이재관 · 이훈기 · 장종태
정진욱 · 조인철 · 진성준
채현일 · 최민희 · 최혁진
의원(18인)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높은 지분을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 행사에 제약이 큼. 이로 인해 ESG·지배구조 개선 등 중요한 경영 현안에 대해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도 제한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권고적(advisory) 주주제안 제도를 두어 주주와 이사회 간 건설적 소통을 제도화하면서도 경영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일본은 절대 주식 수 기준을 병행하여 주주제안 문턱을 낮추고 있음.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와 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관여활동 및 스튜어드십 코드 실천을 지원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한편, 현재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이 2주로 짧아 위임장 대결 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회사가 주주제안을 무력화할 의도로 공고를 촉박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 전까지 하도록 개선하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 확대 등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여 주주권 보장과 이사회 자율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해외 투자 유인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 전까지 하도록 개선함(안 제542조의4).

나. 상장회사의 주주제안 요건을 현행 6개월 전부터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주제안을 활성화하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외에 ESG 이슈 등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함(안 제542조의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4제1항 중 “2주”를 “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로 한다.

제542조의6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6(주주제안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4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제363조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이 상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u>2주</u>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 ----- ----- ----- ----- <u>4주(임시총회의 경우 8주)</u> -----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생략)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현행과 같음)
② <u>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u>	<u><삭 제></u>

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 ⑩ (생략)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신설>

③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6(주주제안권) ① 6개

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
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
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4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제363조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이 상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